

전기용품안전관리법운용에관한지침

전기용품안전관리법운용에관한지침중개정고시

산업자원부는 지난 11월 10일(산업자원고시 제99-131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운용에관한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운용에관한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내지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조(형식승인의 신청 등) ① 1종전기용품의 제조업자(이하 제조업자 라 한다)가 1종전기용품의 형식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한 제조업자에 대하여 전기용품의 형식승인을 함에 있어 자체검사 능력 등 기술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검사는 시험기관 및 단체 등과 협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칙 제26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소한의 비용을 형식승인 신청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④ 기술표준원장은 형식승인을 한 경우에는 형식승인의 내용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⑤ 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외국의 제조업자가 형식승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법제10조, 제12조, 제22조 및 지침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과 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행 등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 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지정은 별지서식1에 의거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한 때에는 기술표준원장에게 변경내용을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기술표준원장이 외국제조업자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8조,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형식승인 승계등)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제조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때와 합병이 있는 때에는 상속인·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 하는 사업자와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제조업자의 형식승인을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승계한 자는 각호의 서류중 승계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 그 내용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전기용품형식승인승계등 통보서(별지서식2)
2. 전기용품제조업양도(합병)증명서(별지서식3)
3. 전기용품제조업자상속(동의)증명서(별지서식4)
③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사업장의 소재지·업체명 변경 등으로 형식승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기술표준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의 승계 또는 변경사항을 통보받은 사항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이하 안전관리협회라 한다)에게 사실확인을 지시 할 수 있다.

- ⑤ 안전관리협회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기술표준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승계 및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협회에서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한의 경비를 형식승인 승계자 또는 형식승인 변경 통보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5조(시험성적서 발행 등) 지정시험기관은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시험성적서는 별지서식4-2에 의하고 그 시험신청자에게 시험성적서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형식승인을 신청하도록 한다.

제6조(형식승인 유효기간 갱신) 기술표준원장은 법제11조 및 규칙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용품 형식승인 유효 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과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때에는 지체없이 갱신승인서를 발급하고 기술기준에 미달된 업체에 대해서는 갱신 불허를 알려주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한다

제9조제1항제1호의 “전기온상선”을 삭제한다.

제11조제3호의 “시험기준치와 결과치”를 “시험항목에 대한 불합격 내용(기준치 및 결과치)”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의 “경결함”을 삭제하고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처분) ① 기술표준원장은 제7조제5항, 제8조, 제15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실시 결과 다음 각호의 결함이 있는 때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취소처분을 하거나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요청한다.

1.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최종결함
 2. 동일품목(이 경우 동일품목은 동일 형식구분 또는 동일규격을 뜻한다)으로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결함이 연2회 이상 발생
 3. 제12조제1항제2호의 중결함이 3개이상 발생
- ② 제12조제1항제2호의 중결함이 있는 때에는 개선권고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명령을 받은 자는 수거명령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서식5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보고 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1종전기용품이 최종결함으로 판정되어 제1항의 형식승인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품목에 대한 형식승인을 1년간 불허할 수 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운용에관한지침

제15조제1항의 “제3조제2항”을 “제3조제4항”으로 하고 D등급 사후관리기준란의 “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 명령”을 “개선권고”로 하며, 제3항제1호의 “상항조정”을 “개정”으로 하고, 동항제2호의 “안전침해”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발생할”로 하며, 동항제3호의 “기준”을 “별표4의 전기용품공장검사평가기준”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6항을 삭제한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후관리시 제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방법과 특별사후관리 결과에 대한 처분 등은 제8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제2항의 “면제”를 “감면”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형식승인의 신청)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에 무역업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를 “형식승인을 받은 자 또는 전선류, 퓨우즈류, 배선기구류, 전류제한기, 전구류,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류와 제품의 특성상 아프터서비스가 필요없는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의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하거나 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로 한다.

4. 보고 및 통지에 관한 사항

제24조의 “수입업자”를 “수입판매업자”로 한다.

제25조의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항을 삭제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결과 별표6의 기준에 미달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처분 을 하여야 한다.

1. 결합내용이 최중결합에 해당되거나 평가기준 미달이 개선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취소와 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조치
2. 조치기준중 최중결합보다 경미한 미달에 해당되거나 평가기준 미달이 용이하게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 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후관리 실시

- ⑤ 제4항의 규정중 수거명령에 대한 처분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제1항제1호의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인 연구 기관”을 “민법 제32조와 개별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의 “확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국립기술품질원장과”를 “확인은 그 최소한의 수량에 대해서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술표준원장과”로 한다.

5.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로서 자기수요의 연구개발 또는 시설기자재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전기용품

제27조의 “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심사위원회”를 “기술표준원장은 영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자문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2항의 “국립기술품질원 기전제품안전과장”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과장”으로 하고, 제3항제1호 및 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의 “제2호”를 “제1호”로, “제4호”를 “제2호”로 한다.

별표1의 지역별 기호중 “북한”을 “30”으로 신설한다.

별표2의 결합내용중 “경결함” 해당사항을 “중결함” 해당사항으로 하고, 품목명란의 “전기온상선”, “재봉기용콘트롤러”, “전류제한기”, “연소기구용변압기”, “전기연탄가스배출기”, “전기분수기”, “디스포자”, “전기연필깎기기”, “욕조용전기기포발생기”, “LCD플레이어”를 삭제하며, “전구식형광등기구”를 “안정기내장형램프”로하고, “금속제전선관용부속품류”를 “금속제박스”로 하며, 비교1의 “경결함”을 “중결함”으로 한다.

별표3 도표내의 ‘개선으로 취급하는 것(경결함)”을 “행정지도 또는 특별사후관리”로 하고, “업무정지 및 개선처리(중결함)”를 “특별사후관리(중결함)”로 한다.

별표4 평가항목의 검사항목란 8. 기타 행정지시 및 교육이행여부의 a평가에 해당되는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행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을 때
- (2) 경영자(이사급 이상)중 1인 이상이 최근 3개년간 1회 이상 안전관리협회의 안전 및 품질경영교육(18시간 이상)을 필하였을 때
- (3) 안전 또는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1인 이상이 최근 1개년간 1회 이상 안전관리협회의 안전 및 품질경영교육을 필하였을 때
- (4) 사후관리결과 미달사항 발생으로 특별사후관리 대상으로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술표준원장이 안전관리협회의 특별교육을 이수토록 지시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 1인 이상이 6월 이내에 이를 필하였을 때
- (5) 전 종업원이 연 10시간 이상 사내교육을 받고 있을 때

별표6의 결합내용중 “경결함”을 “중결함”에 포함시키고, 비교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교 결합내용중 중결함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중결함으로 판정한다.

제2조본문, 제7조제2항본문 · 제2항 · 제3항 내지 제5항,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본문 및 제4호, 제19조 본문, 제21조제1항 · 제2항, 제22조제1항 · 제2항, 제23조제1항본문 및 제6호 · 제2항, 제25조제1항 · 제3항 본문 및 제4호, 제28조제2항 · 제3항제4호의 “국립기술품질원장”을 “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